

## 제 10 장 자연인의 이동

### 제 10.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부속서 10-가에 언급된 모든 범주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상호 호혜적 무역 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고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공동의 희망, 그리고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3.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시민권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 거주나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장은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인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 영역으로 입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 10.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 제1장(최초 규정 및 정의), 제10.6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20장(분쟁 해결), 제21장(제도 규정), 제22장(일반적 규정 및 예외) 및 제23장(최종규정)과 제19.1조(공표), 제19.2조(정보 제공) 및 제19.3조(행정절차)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에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의 그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 10.3 조 일시 입국의 허용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10-가에 명시된 자연인의 각 범주별로 자국의 구체적 약속을 부속서 10-가에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부속서 10-가의 범주의 조건을 포함하여,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 대하여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 자연인은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관련 법과 규정, 그리고 그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부속서 10-가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발급될 비자의 총 수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sup>34</sup>

#### 제 10.4 조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요건 및 절차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및 자국 영역 내 일시 체류를 허용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부여될 수 있는 출입국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추가적인 출입국 절차 요구나 절차의 연장을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으로부터 접수된 완전한 출입국 절차 신청을 신속히 처리한다.

3. 일시 입국을 요청하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신청 완료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가. 신청의 접수

나. 신청의 상태, 그리고

다. 다음을 포함하는 신청과 관련한 결정

1) 승인될 경우, 체류 기간 및 그 밖의 조건, 또는

2) 거절될 경우, 거절 사유 및 재심을 위한 모든 방법

4. 각 당사국은 출입국 절차 신청에 관한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가 그 자체로 이 장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부당한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한 절차 및 요건을 자국의 법과 규정의 틀 내에서 간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sup>34</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의 경우 ‘제한’이라는 용어는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포함한다.

## 제 10.5 조 온라인 신청 및 처리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출입국 절차의 온라인 신청 및 처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 10.6 조 분쟁 해결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2. 제20장(분쟁 해결)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는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이 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 나. 관련 당사국의 자연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가능한 경우 행정적 구제 절차들을 완료하였을 경우
3. 그러한 구제를 위한 절차(재심이나 불복청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개시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내려지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관련된 자연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나호에 언급된 구제조치들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 10.7 조 투명성

제19.1조(공표) 및 제19.2조(정보 제공)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 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개월 이내에,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요건에 관한 설명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그 요건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그리고
- 나.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 제 10.8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출입국 절차**란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 일시 입국하도록 허용하는 비자, 허가 또는 그 밖의 모든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문서를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그 당사국의 법에 따른 다음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일시입국이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의 영구적 거주 의도가 없는 입국을 말한다.

**부속서 10-가**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구체적 약속**

**제1절**  
**한국의 구체적 약속**

1. 한국은 이 장 및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호주의 기업인에 대하여, 입국 전 적절한 출입국 절차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2. 한국은 진행 중인 노동 분쟁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노동 분쟁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에 대하여 일시 입국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

**호주의 상용 방문자**

3. 호주의 상용 방문자에 대하여, 고용 허가를 취득할 것을 그 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 상용 방문자가 일시 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4. 호주의 상용 방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호주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 서비스 판매자로서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한국 영역에 입국하는 자
- 2) 상품의 판매를 협상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러한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3)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서 제6항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가이고 투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나. 제안된 영업 활동을 위한 보수의 일차적 소득원, 주된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한국 밖에 있는 자

**호주의 기업 내 전근자**

5. 호주의 기업 내 전근자는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이 일시 입국에 적용가

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6. 기업 내 전근자란 한국 영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일시 입국의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를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임원은 조직의 실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 나.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해고 또는 다른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이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주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다. 전문가란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 호주의 무역업자 및 투자자

7. 감독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다음 활동을 하고자 하는 호주의 기업인은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이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주로 한국과 호주 사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질적인 무역을 수행하는 것, 또는
- 나. 그 인 또는 그 인의 기업이 상당한 금액의 자본 투자를 약정했거나 약정하는 과정에 있는 투자를 설립, 개발 또는 운영하거나 투자의 운용에 자문이나 핵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호주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8. 부록 10-가-1에 규정된 직업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호주의 자연인은 최대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9.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호주의 자연인을 말한다.
- 가. 전문적 지식의 이론적 및 실질적 적용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직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것
  - 나. 한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및 직업적 자격요건과 직업적 자격이 있고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할 것
  - 다. 한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아니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한편, 그 기업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하였을 것.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따른다.
  - 라.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기업의 피고용인이었을 것, 그리고
  - 마.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아니할 것이 요구될 것
10. 전문가의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테스트가 요구되거나, 전문가의 일시 입국과 관련한 수량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 동반 배우자 및 부양가족

11. 이 장에 따라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호주의 기업 내 전근자, 무역업자, 투자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동일한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일시 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한국의 관련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취업 허가가 부여될 수 있다.

## 제2절 호주의 구체적 약속

1. 호주는 이 장 및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한국의 자연인에 대하여, 입국 전 적절한 출입국 절차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이 부속서에 따른 일시 입국의 허용은 일시 입국 허용의 신청 당시에 적용가능한 경우 호주의 이민법과 규정에 포함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을 위한 자격 요건은 고용주의 추천과 직업 요건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한국의 상용 방문자

2. 제4항가호에 언급된 한국의 상용 방문자는 9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3. 제4항나호에 언급된 한국의 상용 방문자는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체류의 연장이 가능하다.

4. 한국의 상용 방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한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투자 목적을 포함한 상용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연인으로서, 방문 기간 동안의 보수와 재정적 지원이 호주 밖의 소득원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에 종사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자체의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자, 또는

나. 호수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는 자연인인 서비스 판매자로서, 방문 기간 동안의 보수와 재정적 지원이 호주 밖의 소득원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서비스 공급 기업의 판매 대리인으로서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또는 그 서비스 공급 기업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

###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

5. 제7항가호에 언급된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는 4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체류의 연장이 가능하다.

6. 제7항나호에 언급된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는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체류의 연장이 가능하다.

7.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란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통하여 호수에 설립되고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호주 내 그 기업의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보직을 채우기 위하여 파견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원 또는 고위 관리자로서, 호주 내 기업 운영의 전체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자연인이며, 주로 그 기업의 고위급 임원, 이사



회 또는 주주로부터 그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부서 또는 하부 조직에 대한 지휘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를 받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그 기업의 부서 또는 하부 조직의 목표와 방침을 수립할 권한을 보유하는 자, 또는

- 나. 전문가로서, 고급 무역, 기술 또는 전문 능력 및 경험이 있는 자연인이며, 그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격, 또는 호주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대체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 입국 신청일 직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인에 의하여 고용되었어야만 하는 자

### 한국의 독립 임원

- 8. 한국의 독립 임원은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 9. 한국의 독립 임원이란 한국에 본사를 두고 호주에 그 기업의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을 말하며, 그 기업의 호주 내 운영의 전체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담당할 자연인으로서 주로 그 기업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그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부서 또는 하부 조직에 대한 지휘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를 받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그 기업의 부서 또는 하부 조직의 목표와 방침을 수립할 권한을 보유한다.

### 한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 10. 한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는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체류의 연장이 가능하다.
- 11. 한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무역, 기술 또는 전문 능력 및 경험이 있고, 그들의 지정 직업을 위한 호주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필요한 자격, 기술 및 업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한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 가. 호주 내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호주 내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아니하는 한국 기업의 피고용인, 또는
  - 나. 호주 내에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고용된 자

### 동반 배우자 및 부양가족

- 12. 이 장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권리가 부여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한국의 자연인에 대하여, 호주는 신청에 따라 그 동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그 자연인과 동등한 기간 동안의 입국 및 일시 체류, 이동 및 노동의 권리를 부여한다.

**부록 10-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1. 건설 및 발전 장비를 제외한 산업 장비 또는 기계류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로서, 호주에 위치한 자연인을 고용하는 기업으로부터 그 장비 또는 그 기계류를 구입하는 한국 내 기업에 대한 것
2. 정보기술, 전자 상거래, 생명 공학,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 공학 또는 환경 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3. 회원 계약을 통한 한국 회계 기업 또는 사무소에 대한 자문 서비스로서, 외국 회계 표준 및 감사, 공인회계사의 훈련, 감사 기술의 이전, 그리고 회계, 감사 그리고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것
4. 한국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공동 계약 형태로의 공동 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5. 경영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6. 다음의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 가. 컴퓨터 하드웨어의 설치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
  - 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기초한 이행 서비스
  - 다. 정보 관리 서비스
  - 라. 정보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 마.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